

# 지정기초자료 작성 및 제출 매뉴얼(주권상장법인)



회계관리국

# 1. 지정기초자료 제출대상

□ 주권상장법인(유가, 코스닥)은 지정기초자료를 정해진 기간안에 제출해야 함(「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3항), 코넥스는 의무제출대상은 아니지만 제출을 권장

※ 당기 사업연도 등의 감사인 지정 여부와 상관없이 지정기초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다만, 외국회사 및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제3항에 해당하여 외부감사의 대상이 아닌 경우는 제외

□ 지정기초자료는 사업연도 시작후 9개월째 되는 달의 초일부터 2주 이내(12월 결산법인 금번 제출기한은 9.14.) 제출해야 함

※ 예) 12월결산 법인: 9.1.~9.14. 6월결산 법인: 3.1.~3.14. 기간중 제출

※ 지정기초자료는 서버점검시간(새벽 0~6시)를 제외하고 제출가능(휴일포함)하나 근무시간외에는 시스템 오류 등 발생시 응대할 수 없음에 유의

□ 회사가 지정기초자료를 미제출하거나 거짓 기재, 또는 기재해야 할 사항을 빠뜨린 경우 감사인 지정조치 될 수 있음(시행령 제14조 제6항제6호)

## II. 지정기초자료 제출방법

### ①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http://eacrs.fss.or.kr>)에 접속하여 로그인

금융감독원 |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



### 금융은 튼튼하게

#### 금융감독원은

급변하는 대내외 금융환경과 다양한 위험요인에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외감선임 및 제외 문의 02. 3145. 7767  
 기타 보고제도 문의 02. 3145. 7763  
 로그인 & 인증서 문의 국번없이 1332 (5번)  
 시스템(오류) 문의 02. 3145. 5463

### ② [회사·제출서류]-[지정 기초자료 신고서(상장법인)]을 선택

금융감독원 |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

원격지원서비스 [→]

기본정보 **회사·제출서류** 감사인·제출서류 수시보고 접수 접수현황 공문 및 첨부서류 샘플 다운로드

- 감사인 선임보고서
- 외감대상 제외신청
-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
- 감사전 연결 재무제표 제출
- 감사인 지정(제지정) 신청
- 지배주주 등의 소유주식 현황 등 제출
- 지정 기초자료 신고서 (상장법인)**
- 지정 기초자료 신고서 (대형비상장법인)
- 감사계약 해지보고
- 열린창구(Q&A, 건의사항, 부당행위 신고 등)

### 지정 기초자료 신고서(상장법인)

보고제도 문의 02. 3145. 7761  
 시스템 문의 02. 3145. 5463

#### 1. 회사개황

1-1 회사명	운영서버용	1-2 회사 고유번호	00000000
1-1-1 회사명 변경 여부	선택	1-1-2 변경 전 회사명	
1-3 법인등록번호	1111112222224	1-4 사업자등록번호(본점)	1168214464
1-5 최근 1년 이내 합병 분할 내역			
1-6 대표자명		1-7 전화번호	XXX-XXXX-XXXX
1-8 주소(우편번호)			
1-9 법인구분	선택	1-9-1 기술성장기업 여부	선택
1-10 소속 업종명		1-10-1 소속 업종코드	
1-11 금융회사 등 여부	선택		

※ 제출완료후 수정 필요시 처음부터 재작성하셔야 하며, 다수건을 제출하신 경우 기한내 최종 제출된 자료를 지정기초자료로 간주할 예정입니다.

※ **지정기초자료 작성과 관련한 문의 : 02-3145-7763, 7975**

- 유선문의가 폭주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과거 감사인 지정여부', '감리여부' 등 회사의 사실관계 확인 문의는 자제부탁드립니다.
- 문의사항이나 궁금한 점을 제출서류 2-13.에 기재하시면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유선 연락드릴 예정입니다.

※ **시스템 오류로 인한 문의 : 02-3145-5463, 5401, 5413**

- 유선문의가 폭주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시스템 접속 및 제출오류 등이 아닌 '신고서 제출 완료' 여부 등 확인을 위한 문의는 자제 부탁드립니다.

### III. 지정기초자료 작성방법

#### 지정 기초자료 신고서(상장법인)

보고제도 문의 02. 3145. 7761  
시스템 문의 02. 3145. 5463

#### 1. 회사개황

1-1 회사명	운영서버용	1-2 회사 고유번호	00000000
1-1-1 회사명 변경 여부	예	1-1-2 변경 전 회사명	가나다주식회사
1-3 법인등록번호	11111122222224	1-4 사업자등록번호(본점)	1168214464
1-5 최근 1년 이내 합병 분할 내역	22.12.31. ABC주식회사(01234567)를 흡수합병 22.3.31. 라다마주식회사(02345678)로 물적분할		
1-6 대표자명	홍길동	1-7 전화번호	010-1234-5678
1-8 주소(우편번호)	0732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1-1. 1-2. 1-3. 1-4.) 제출하려는 회사가 맞는지 확인한다.

(1-1-1. 1-1-2.) 최근 3년 이내 회사명 변경이 있는 경우 “예”로 선택하고 변경 전 회사명을 기재 (다수인 경우 모두 기재)한다.

(1-5) 지정대상 선정일(사업연도 시작 후 9개월째 되는 달의 초일,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9월 1일을 말한다.)로부터 과거 1년 이내 합병·분할기일(등기일), 회사명(금감원 고유번호)을 포함한 합병·분할 세부 내역을 기재한다.

(1-6. 1-7. 1-8.) 대표이사(공동·각자대표이사 전원), 당해업무 담당자 연락처(휴대전화 가능) 및 담당자가 수령할 수 있는 회사 소재지(본점이외도 가능) 주소(도로명 주소)를 기재한다.

1-9 법인구분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	1-9-1 기술성장기업 여부	선택
1-10 소속 업종명		1-10-1 소속 업종코드	123
1-11 금융회사 등 여부	해당없음		
1-12 당기 사업연도	제 23 기 2023.01.01 ~ 2023.12.31	12	개월
1-12-1 사업연도 결산기 변경 여부	아니요		
1-12-2 결산기 변경 내용 (1-12-1에서 '예'인 경우)			

(1-9-1.) 지정대상 선정일 현재 코스닥 기술성장기업부내에 기술성장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예”를 선택한다.

(1-10. 1-10-1.) 한국거래소에 등록된 당해회사의 업종명과 업종코드(6자리)를 기재한다.

\* 업종코드: 한국거래소-정보데이터시스템-(종목검색을 화면검색으로 변경후) 검색어에 12020을 입력하면 조회가능

(1-11.) 지정대상 선정일 현재 금융회사 및 기업인수목적회사 해당하는 경우 각각을 선택하고 그 외의 회사는 “해당없음”을 선택한다.

\* 금융회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농협은행  
기업인수목적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4항제14호에  
해당하는 회사

(1-12.) 지정대상 선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12월 결산법인의 경우 2023.1.1.~2023.12.31.)를 기재하고,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인 회사는 “지정대상 선정일의 기산일이 되는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 사업연도”를 당기 사업연도로 기재한다.

(1-12-1. 1-12-2.) 최근 3년이내 사업연도 결산기 변경이 있는 경우 “예”로 선택하고 변경이력을 기재(다수인 경우 모두 기재)한다.

1-13 신고서 제출 공문 첨부	<input type="text"/>	파일 선택
1-14 감사인 대리제출 여부	아니요 <input type="checkbox"/>	
1-14-1 감사인 대리제출에 대한 위임장	<input type="text"/>	파일 선택

(1-13.) 회사가 이 신고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기 위한 공문을 첨부한다(샘플양식 참고).

(1-14. 1-14-1.) 대리제출하는 경우 “예”를 선택하고 회사의 위임장도 함께 첨부한다(오류기재로 인한 책임소재, 회사 정보 유출 등에 유의).

## 2. 신고사항

공문 및 첨부서류 샘플 다운로드

2-1 연결 재무제표 작성여부			
당기	전기	2기 전	3기 전
예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요 <input type="checkbox"/>

(2-1.) 당기를 포함한 3개 사업연도(예: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의 연결재무제표 작성 여부(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이면 “예”)를 선택한다.

\* 결산기 변경으로 12개월미만 사업연도가 있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를 1개 사업연도로 포함

2-2 재무기준	전기	2기 전	3기 전
2-2-1 영업이익	123,123 원	123,123 원	123,123 원
2-2-2 영업현금흐름	123,123 원	123,123 원	123,123 원
2-2-3 이자비용	123,123 원	123,132 원	1,233,213 원
2-2-3-1 영업비용상 이자비용	321,321 원	321,321 원	321,321 원
2-2-4 부채총액	321,321 원	321,321 원	321,321 원
2-2-5 자본총액	321,321 원	321,321 원	321,321 원
2-2-6 자산총액	1,212 원	111,111 원	111,111 원
2-2-6-1 전기말 별도재무제표상 자산총액	1,515,151,515 원		
2-3 비교재무제표 수정여부	아니요 <input checked="" type="checkbox"/>		
2-3-1 비교재무제표 수정사유			

(2-2.) 재무기준 항목(2-2-1~2-2-6)은 직전 3개 사업연도(예: 2022년, 2021년, 2020년)를 대상으로 작성하며, 모든 수치는 '원' 단위로 기재한다.

1) 각 사업연도 기준으로 개별(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한다.

\*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회사도 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한다.

2) 각 사업연도의 재무수치는 해당 시점의 감사보고서상에 기재된 수치(수정발행된 경우 최종 공시된 보고서 기준)를 기재한다.

\* 예) 2021년 재무수치는 2021년 감사보고서상의 금액을 기재(2022년 감사보고서상 비교 표시된 2021년 수치가 아님에 유의)

3) 2)의 예외사항으로 회사가 과거 발생한 오류수정을 비교표시 재무제표를 수정하는 방식으로 반영한 경우 비교표시 재무제표상의 재무수치를 기재한다(이 경우 2-3. 항목에 "예"로 선택하고 관련 사업연도 및 수정사유를 기재).

\* 참고로, 중단사업, K-IFRS 전환 등으로 인한 비교표시 재무제표의 변동은 오류수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상 재무수치를 기재

(2-2-3.) 이자비용은 영업외손익에 계상된 이자비용, 금융비용(원가)에 포함된 이자비용 성격의 금액을 기재(예, 사채상각액 등은 합산하여 포함하되, 외화환산손실 등은 제외)한다.

(2-2-3-1.) 금융회사 및 경제적 실질에 따라 금융회사와 동일한 형태로 손익계산서를 표시한 회사의 경우 기재(영업비용 상 금액만 기재하고 영업외비용 항목은 2-2-3에 기재)한다.

(2-2-6-1.) 전기 사업연도(예, 2022년) (별도)개별재무제표의 자산총액을 기재(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회사도 반드시 별도재무제표의 자산총액을 기재)한다.

2-4 과거 3년간 최대주주 변경 횟수 1 건

2-4-1 최대주주 변경 내역 추가

변경일자 2020.10.24  변경 전 최대주주 김가나 변경 후 최대주주 이다라

변경사유 등 주식인수 삭제

---

2-5 과거 3년간 대표이사 변경 횟수 1 건

2-5-1 대표이사 변경 내역 추가

변경일자 2021.10.29  변경 전 대표이사 최마바 변경 후 대표이사 박아자

변경사유 등 임기만료 삭제

(2-4. 2-5.) 과거 3년간(12월 결산법인의 경우 '20.9.2.~'23.9.1. 기간) 대표이사 및 최대주주 변경 내역을 기재한다.

- 1) 변경횟수 만큼 '추가'버튼을 누르면, 그에 따른 세부입력 화면(2-4-1, 2-5-1)이 생성되며 생성된 화면의 변경내역을 모두 기재하여야 함
- 2) 변경횟수는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산정
- 3) 예시) 대표이사가 다음의 표와 같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횟수: 1회, 변경일: 22.3.10. 변경전 대표이사: A, B 변경후 대표이사: C, D 변경사유: 사임>으로 기재

(예시) 대표이사 변경 내역

변경일	변경전	변경후	변경사유	비고
21.8.1.	A, B	B, C	임기만료	변경횟수에 포함
22.3.10.	B, C	C, D	사임	변경횟수에 포함

※ 입력에 모호함이 있더라도 별도 문의없이 회사 판단으로 기재하되, 의문사항은 2-13. 기타 추가사항에 기재 또는 관련문서를 첨부

대표이사 및 최대주주 변경의 예외사유

<p>&lt; 대표이사 변경 예외사유 &gt;</p> <p>① 사망, 실종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표이사가 교체된 경우</p> <p>② 대표이사가 둘 이상이고 이 중 일부만 교체된 경우[기존 대표이사 전원 교체시(순차교체 포함)에 1회 교체로 간주]</p> <p>* 예, A, B → A, C (교체로 보지 않음) → C, D (교체에 해당)</p> <p>③ 기존 대표이사는 교체되지 않고, 대표이사의 수가 변경되는 경우</p>
--

< 최대주주 변경 예외사유 >

- ① 사망, 상속, 실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최대주주가 변경된 경우
- ② 경영참여목적이 없는 기관투자자가 최대주주가 되어 변경된 경우
- ③ 최대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자(외감법 시행령 §15조④)들 간에 지분변동이 발생하여 변경된 경우
- ④ 동일 주식매매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최대주주가 여러번 변경된 경우는 지정대상 선정시 예외로 인정됩니다.

2-6 권리종목 지정 여부	예 <input type="checkbox"/>
2-6-1 권리종목 지정 사유	반기보고서 미제출
2-7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 여부	선택 <input type="checkbox"/>
2-7-1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 사유	

(2-6. 2-6-1.) 지정대상 선정일 현재(12월 결산법인의 경우 9.1.) 권리종목으로 지정된 경우 “예”를 선택하고 지정사유를 모두 기재한다.

(2-7. 2-7-1.) 지정대상 선정일 현재(12월 결산법인의 경우 9.1.)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된 경우 “예”를 선택하고 지정사유를 모두 기재한다.

2-8 소속 임직원의 횡령·배임 혐의 1 건

2-8-1 세부내용

추가

공시일	구분	혐의금액	자기자본
2022.12.27	임원 <input type="checkbox"/>	23,456,789	12,345,678,900

삭제

(2-8. 2-8-1.) 최근 1년간(12월 결산법인의 경우 '22.9.2.~'23.9.1. 기간) 소속 임원(「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또는 직원(퇴임하거나 퇴직한 임직원을 포함한다)이 횡령 또는 배임을 했다는 혐의로 회사가 소속 임직원을 고소하거나 소속 임직원에게 대한 공소가 제기되었는지 여부를 기재한다. 단, '22.9월 이전 발생한 경우라도 혐의 금액 등을 '22.9월 이후 확인 시에는 기재한다

- 1) 한국거래소에 공시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
- 2) 복수의 사항이 있는 경우 모두 기재
- 3) 재판결과 및 진행사항 등 최초 발생사항이 아닌 경우 제외
- 4) 자회사와 관련한 공시내용은 제외
- 5) 자기자본금액은 공시발생일 직전 사업연도 금액을 기재

※ 입력에 모호함이 있더라도 별도 문의없이 회사 판단으로 기재하되, 의문사항은 2-13. 기타 추가사항에 기재 또는 관련문서를 첨부

2-9 신용등급				추가
등급부여일	평가기관	평가대상	등급	삭제
2022.12.31	한국기업평가	기업	AA	

(2-9.) 최근 1년 이내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NICE신용평가)으로부터 받은 신용등급(기업신용평가 또는 무보증회사채)을 기재하고 증빙문서를 2-13.에 첨부

- 1) “최근 3년 연속 영업손실이거나 영업현금흐름이 0보다 작은 경우 또는 이자보상배율이 1미만인 경우”에 따른 지정예외사유 판단을 위한 자료로 해당사항 없는 경우 기재 생략
- 2) 투자등급(BBB등급, 한국기업평가의 신용등급 기준, 이와 동등한 타 신용평가기관 등급을 포함)이상의 신용등급이 있는 경우에만 기재
- 3) 회사가 기업신용평가 또는 무보증회사채에 대해 받은 신용등급만 해당되며, 열거된 신용평가기관을 제외하고 신용정보회사가 타 목적으로 등급을 부여하거나 제3자가 요청하여 받은 등급은 제외

2-10 최근 6개 사업연도 감사인 선임 방법					
당기	전기	2기전	3기전	4기전	5기전
자유선임	자유선임	자유선임	자유선임	자유선임	지정
2-10-1 당기 감사인		차카회계법인			
2-10-2 3개 사업연도 연속감사의 당기 감사 차수		2년차			

(2-10.) 회사의 당기 이전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 외부감사를 “자유선임”, “지정”, “해당없음”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 “해당없음”은 각 시점에 회사가 외부감사법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경우 선택

(2-10-1.) 회사의 당기(예: 2023년) 감사인명(회계법인)을 기재한다.

(2-10-2.) 3개 사업연도의 연속감사 중 당기의 차수(지정감사 시 “기타”)를 기재한다.

\* 2021년도에 3년 계약한 경우 당기에 해당하는 2023년 사업연도는 3년차에 해당

2-11 과거 6년내 재무제표에 대한 감리 횟수			1	건
2-11-1 세부내용				
감리여부	조치(무혐의)일	감리기관	추가	
조치	2022.12.27	금융감독원	삭제	

2-12-1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 내역

추가

조치일 2022.12.27  조치사유 감사전재무제표 미제출

삭제

조치내용 감사인 지정 1년

2-12-2 외부감사법상 조치에 대한 소송 등 내역

23.3.31. 서울행정법원에 감리조치(22.12.27.)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소송 진행중

(2-11.) 지정대상 선정일로부터 과거 6년 이내에 감리받은 횟수와 세부내용을 기재한다.

- 1) 감리횟수 만큼 '추가'버튼을 누르면, 그에 따른 감리 횟수 증가와 세부입력 화면(2-11-1)이 생성되며 생성된 화면의 세부내용을 모두 기재하여야 함
- 2) 재무제표 심사(외감규정 §23①1호나목)는 감리(외감법 §26조)와 다르므로, 감리횟수에는 심사를 제외하고 산정
- 3) "감리중": 감리착수하였으나 현재 최종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경우, "무혐의": 감리결과 혐의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거나 조치없음으로 통지 받은 경우, "조치": 주의 등 조치받은 경우

(2-12.) 지정대상 선정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에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조치받은 횟수와 조치내역을 기재한다.

\* 재무제표 감리결과외에 시행령 제14조제6항제3호 등에 따른 위반사항으로 조치받은 사항

- 1) 조치횟수 만큼 '추가'버튼을 누르면, 그에 따른 조치횟수 증가와 세부입력 화면(2-12-1)이 생성되며 생성된 화면의 조치내역을 모두 기재하여야 함

(2-12-2.) 외부감사법 상 조치와 관련된 소송 및 집행정지 등의 세부내용을 기재한다.

\* 지정대상 선정일로부터 과거 1년(12월 결산법인의 경우 22.9.1.)이전에 종료된 내역은 제외함

※ 입력에 모호함이 있더라도 별도 문의없이 회사 판단으로 기재하되, 의문사항은 2-13. 기타 추가사항에 기재 또는 관련문서를 첨부

2-13 기타 추가 제출 내역

파일 선택

(2-13.) 기타 추가로 기재할 내용 및 제출할 자료(제출할 서류가 복수일 경우 압축파일 형태로 첨부)가 있는 경우에 기재한다.

(입력완료시) 제출 버튼을 클릭한다.